

##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박종민

나. 생년월일: 1942.02.19.

다. 소 속: 삼영감정평가사사무소

(인천 남동구 간석동 905-2 서해빌딩)

### 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9월

나. 효력발생일: 2023.06.05.~2024.03.04.

다. 사유: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감정평가서가 아닌 빈 용지에 서명만 하는 이른바 ‘사인지’를 이용하여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작성·발급하게 하였으며, 형식적으로 별개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의 구분 없이 서해·삼영·두리 감정평가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05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